

수 원 지 방 법 원

제 5 민 사 부

판 결

사 건	2009나20915 구상금
원고, 항소인	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 마포구 송달장소 과천시 대표자 이사장 정○○ 법률상 대리인 이○○
피고, 피항소인	□□□□□□ 주식회사 과천시 대표이사 박○○ 소송대리인 □□□□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오○○
제 1 심 판 결	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. 7. 8. 선고 2009가소4642 판결
변 론 종 결	2010. 3. 23.
판 결 선 고	2010. 5. 25.

주 문

1.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.
피고는 원고에게 1,727,935원 및 이에 대한 2007. 5. 24.부터 2010. 5. 25.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.
3. 소송총비용 중 40%는 원고가,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.
4.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2,612,910원 및 그 중 2,202,620원에 대하여는 2006. 6. 3.부터, 291,660원에 대하여는 2006. 11. 16.부터, 118,630원에 대하여는 2007. 5. 24.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%의,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건강보험사업을 운영하는 보험자이고, A는 원고의 가입자로서 피보험자이다.

나. A는 2006. 3. 30.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 □□동 0000-0 소재 B(주)□□□□ 서초점 여성사우나(이하 '이 사건 목욕탕'이라 한다)에서 목욕을 마치고 목욕탕 입구 전실에서 탈의실로 이동하던 중 전실 출입구 계단에서 바닥으로 미끄러지면서 정

강뼈 하단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(이하 '이 사건 사고'라 한다).

다. 이 사건 목욕탕의 이용객들은 목욕탕 출입문을 나와 돌계단을 두 개 내려간 다음 탈의실로 가는 계단을 올라가야 하는데, 이 사건 사고 당시 출입문 앞의 바닥에는 수건이 깔려 있었으나 이용객들이 밟고 내려가는 계단 부분에는 수건나 미끄럼 방지를 위한 깔개가 깔려 있지 않았고, 계단을 내려가는 이용객들을 위한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계단이 미끄러울 수 있으니 주의를 하라는 내용의 안전표지도 부착되어 있지 않았다.

라. A는 B(주)□□□□ 서초점의 회원으로서 이 사건 사고 전에도 이 사건 목욕탕을 수차례 이용한 적이 있다.

마. A는 이 사건 사고로 가톨릭대학교강남성모병원, 나비여성한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는데, 원고는 A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으로 2006. 5. 10.부터 2007. 5. 23.까지 별지 손해금산출표 기재와 같이 총 진료비 3,455,870원 중 본인부담금 842,960원을 공제한 원고부담 진료비 2,612,910원을 각 요양기관에 지급하였다.

[인정근거] 갑 제1 내지 4호증(각 가지번호 포함), 갑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, 갑 제6호증의 2의 영상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 단

가. 피고의 손해배상책임

1) 손해배상책임의 발생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는 이 사건 목욕탕의 관리자로서 목욕탕 이용객들이 목욕탕에서 탈의실로 이동할 때 미끄러지는 일이 없도록 계단의 물기를 제거하고 손잡이를 설치하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이

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할 것이므로,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A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

2) 책임의 제한

갑 제2호증의 1, 제5호증,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, 갑 제6호증의 2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, 즉, ① 피고는 이 사건 목욕탕의 출입문 앞에 큰 수건을 깔아두어 이용객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려고 한 점, ② 이 사건 목욕탕의 계단이 장판이나 대리석 등에 비하여 거친 재질로 보이는 점, ③ A는 이 사건 목욕탕을 수차례 이용한 적이 있었던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, A는 계단을 내려갈 때 바닥을 잘 살펴 미끄러지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이동하는 등 주의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는바, 이러한 A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다.

따라서, 피고가 배상할 손해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, 그 비율은 위 사고경위 등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전체의 50%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.

나. 원고의 보험자대위

1) 보험자대위권의 취득

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A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데, 원고는 A가 치료받은 각 요양기관에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였고 A가 2006. 3. 30.부터 2007. 4. 7.에 걸쳐 받은 치료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므로,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에게 A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.

2) 보험자대위권의 범위

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 하고 그 공제되는 보험급여에 대하여는 다시 과실상계를 할 수 없으며, 보험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를 한 전액이다(대법원 2002. 12. 26. 선고 2002다 50149 판결 등 참조).

살피건대, A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은 위 총 치료비에서 과실상계를 하고 남은 1,727,935원(= 총 진료비 3,455,870원 × 피고의 책임비율 50%)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1,727,935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 보험급여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바, 위 금액은 원고가 각 요양기관에 지급한 원고부담 진료비 2,612,910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결국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는 1,727,93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라 할 것이다.

따라서, 피고는 원고에게 위 1,727,93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각 요양기관에 원고부담금의 지급을 완료한 다음날인 2007. 5. 24.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0. 5. 25.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 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,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,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,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전주혜 _____

 판사 양우석 _____

 판사 박혜정 _____